

전자거래기본법과 통일전자거래법(UETA)의 비교

전순환*

목 차

- I. 서론
- II. 전자거래기본법과 UETA의 기본적 고찰
- III. 전자거래기본법과 UETA의 비교
- I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I. 서론

1980년대 들어서면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OECD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쟁점을 논의해 오고, 1996년과 1997년에는 UNCITRAL이 전자상거래모델법과 전자서명에 관한 통일규칙 초안을 각각 제정하였다. 이러한 논의 또는 입법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는 전자거래기본법이나 전자서명법 등의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미국, EU, 일본 등도 이를 국내법에 수용하거나 입법지침으로 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전자거래기본법은 정보화의 도래에 따라 일반인들이 안전하게 전자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대하여 서면문서와 동일한 수준의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고 전자거래의 신뢰성 확보, 소비자의 보호,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등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1998년 12월에 제정, 공포되었으며,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2005년 3월 31일에 개정된 것이 최근의 개정이며, 이것은 동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다.

한편,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UETA)은 전자적인 기록과 서명을 종이의 문서 및 수기서명과 법적으로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확립하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1999년 7월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개최된 통일주법전국위원회(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NCCUSL)¹⁾의 연차총회에 의해서 승인되고, 공포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의 전자거래기본법과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의 일반적 고찰 및 양 법

1) NCCUSL은 약 100년전에 각 주에 적용될 통일법이나 모델법을 제시하고, 각 주로 하여금 통일법을 주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각 주에서 임명된 300명 이상의 변호사, 판사 및 법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http://www.nccusl.org>.

* 중부대학교 무역학과 부교수

를 상호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전자거래 관련 법률의 개정에 일조하고자 한다.

II. 전자거래기본법과 UETA의 기본적 고찰

2.1. 전자거래기본법

2.1.1. 전자거래기본법의 제정

전자거래기본법은 산업자원부에 의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정보화시대의 도래에 따라 전자문서에 대하여 서면문서와 동일한 수준의 법률적

등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안심하고 전자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전자거래를 21세기 지식기반산업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하여 1988년 12월에 제정·공포되었다.²⁾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사항, 전자문서의 송수신 등에 관련된 부분 등을 민법, 상법 등의 조항으로 해결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암호화, 전자서명)에 관한 부분만 전자서명법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이 논의의 전제는 전자거래가 기존의 거래방식과 다른 점과 그 의사표시의 전달수단으로 컴퓨터 등 정보통신장치만을 사용할 뿐 기존의 거래방식과 다른 점은 없다는 것이며, 따라서 기존의 법률체계를 가지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

〈표 2-1〉 전자거래기본법의 구성

장(Chapter)	조항(Chapter)	주요사항(Article)
제1장	총칙(제1조-제3조)	목적, 정의, 적용범위
제2장	전자문서(제4조-제11조)	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의 보관, 송신·수신의 시기 및 장소,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 수신확인, 작성자와 수신자간 약정에 의한 변경,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제3장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보호(제12조-제18조)	개인정보보호, 영업비밀보호, 암호제품의 사용, 소비자보호정책의 수립·시행 등,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
제4장	전자거래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제19조-제22조)	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과 정부의 책무, 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시행, 전자거래정책위원회,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제5장	전자거래의 촉진 및 기반조성(제23조-제31조)	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전자거래의 표준화, 전자거래 기술개발의 촉진, 전자거래 전문인력의 양성, 공공부문의 전자거래 추진, 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사, 전자거래의 국제화,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지원
제5장의2	공인전자문서보관소(제32조의2-제31조의14)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결격사유, 시정명령, 지정 취소 및 과징금, 전자문서 보관대행의 효력, 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등, 준수사항, 보고 및 검사 등,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의 보안, 이용자의 정보보호, 배상책임, 수수료 등
제6장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제32조-제38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분쟁의 조정, 자료요청 등, 조정의 성립, 조정의 불성립, 조정비용 등, 위원회의 운영 등
제7장	벌칙(제39조-제42조)	권한의 위임·위탁, 상호주의, 청문,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제43조-제46조)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부칙		

효력을 부여하고 전자거래의 신뢰성 확보, 소비자의 보호,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2) 전순환, 「전자상거래 기본법규」, 한울출판사, 2000. 6, p.14.

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구성형태의 장점은 새로운 개별법 형태의 법률제정없이 기존의 법률의 개정만으로 해결이 가능하여 혼란 없이 전자거래를 기존의 법률체계내로 흡수할 수 있으며, 전자거래의 안전성에 초점을 두고 전자서명에 관한 법률에 집중을 할 수 있어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³⁾

전자거래기본법의 제안이유는 정보화시대의 도래에 따라 전자문서에 대하여 서면문서와 동일한 수준의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고 전자거래의 신뢰성 확보, 소비자의 보호,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등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인이 안전하게 전자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거래를 촉진하려는 것이다.⁴⁾

2.1.2. 전자거래기본법의 특징

전자거래기본법은 UNCITRAL의 전자상거래 모델법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모델법과의 관련성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법이자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전자거래에 관한 규제의 목적이 아니라 그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2.1.3. 전자거래기본법의 구성

전자거래기본법은 다음과 같이 9개장과 59개 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2. UETA

2.2.1. UETA의 제정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UETA)은 1999년 7월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개최된 통일주법전국위원회(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NCCUSL)의 연차총회에 의해서 승인되고, 공표되었다.

UETA의 초안마련을 위한 진행과정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최초의 초안형태로 파악되는 것이 1997년 4월 10일자 초안이므로 그 이전부터 초안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1997년 4월 10일자 초안에서는 법명칭이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Contractual Transactions Act”(ECCT)로 되어 있고, 그에 대해 리포터 Benjamin Beard가 작성한 메모를 보면 초안작성의 주체가 “Drafting Committee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Contractual Transactions”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초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일종의 모델조항(model provisions)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⁵⁾

그러나 1997년 8월 15일자 초안(1차 초안)부터는 법명칭이 현재와 같이 통일전자거래법(UETA)으로 변경되고, 그 작업주체도 통일주법전국위원회의(NCCUSL)로 변경되어 8차의 최종안이 승인되게 된 것이다.

이미 많은 주가 디지털서명 등에 관해서 독자적 입법을 행하고 있지만, UETA는 전자상거래 시대에 있어서 주법을 준비하기 위한 최초의 포괄적인 노력의 성과로서, 전자상거래를 지배하는 각주 공통의 통일적인 규칙을 제공하고자 하고, 미국의 전국적인 노력을 대표하는 입법이다. UETA는 이미 33개 주에서 입법화되었으며, 2001년에 여러 주의회에 의해서 입법화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⁶⁾ 이와 같이 보급의 속도가 빠른 것은

3) 김춘아·김준모,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의 영향 및 의의”, 『정보통신정책』, 제11권 8호, 1995. 5, pp.2-6.

4) 김은기, “전자서명법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1994. 4, p.56.

5) 오병철, “통일전자거래법(UETA)에 관한 고찰-1999년 3월 19일 초안을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제8집, 국제거래법학회, 1999, p.196; <http://nongae.gsnu.ac.kr/~windoh/mywork/국제거래법학회발표논문.htm>

6) 입법화된 주는 Alabama, Arizona, California, Delaware, Florida, Hawaii, Idaho, Indiana, Iowa, Kansas, Kentucky,

<표 2-2> UETA의 구성

영문	국문
Section 1. Short Title	제1조 법령명
Section 2. Definitions	제2조 정의
Section 3. Scope	제3조 적용범위
Section 4. Prospective Application	제4조 장래의 적용
Section 5. Use of Electronic Records and Electronic Signature: Variation by Agreement	제5조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의 사용: 합의에 의한 변경
Section 6.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제6조 해석과 적용
Section 7. Legal Recognition of Electronic Records, Electronic Signature and Electronic Contracts	제7조 전자기록, 전자서명 및 전자계약의 법적 승인
Section 8. Provision of Information in Writing: Presentation of Records	제8조 서면에 의한 정보의 제공: 기록의 제시
Section 9. Attribution and Effect of Electronic Record and Electronic Signature	제9조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의 귀속과 효과
Section 10. Effect of Change or Error	제10조 변경 또는 오류의 효과
Section 11. Notarization and Acknowledgement	제11조 공증과 확인
Section 12. Retention of Electronic Records: Originals	제12조 전자기록의 보존: 원본
Section 13. Admissibility in Evidence	제13조 증거로서의 허용성
Section 14. Automated Transaction	제14조 자동화거래
Section 15. Time and Place of Sending and Receipt	제15조 송·수신 시기와 장소
Section 16. Transferable Records	제16조 양도가능한 기록
Section 17. Creation and Retention of Electronic Records and Conversion of Written Records by Governmental Agencies	제17조 전자기록의 생성 및 보존 그리고 정부기관에 의한 서면기록의 전환
Section 18. Acceptance and Distribution of Electronic Records by Governmental Agencies	제18조 정부기관에 의한 전자기록의 승낙과 분배
Section 19. Interoperability	제19조 상호이행가능성
Section 20. Severability Clause	제20조 분리가능 조항
Section 21. Effective Date	제21조 발효일

미국에 있어서 전자기록·서명에 관한 통일주법으로의 기대가 컸다는 것을 지적한 것일 것이다.⁷⁾

2.2.2. UETA의 특징

UETA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UETA는 전자상거래의 전례 새로운 법규범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UNCITRAL 전자상

거래모델법과 UCC의 관련조항을 적절히 조화시켜 만든 입법이다. UETA는 전자서류나 전자서명이 실거래의 대체관계에 있는 서면이나 수기서명과 많은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절차법이다. 즉 UETA의 최소한의 목적은 어떠한 거래에서도 전자기록은 서면기록과 원칙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어떠한 형태의 전자서명도 수기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누린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동법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존의 미국계약법을 수정한 것이다. 동법이 단지 21개의 조문으로 단순하게 구성된 것도 이러한 이유에 기인된다.⁸⁾

Louisiana, Maine, Maryland, Michigan, Minnesota, Mississippi, Montana, Nebraska, New Mexico, North Carolina, North Dakota, Ohio, Oklahoma, Pennsylvania, Rhode Island, South Dakota, Tennessee, Utah, Virginia, West Virginia, Wyoming 등이며, 2001년 중에 입법화가 예상되는 주는 Colorado, Connecticut, District of Columbia, Illinois, Massachusetts, Missouri, Nevada, New Hampshire, New Jersey, Oregon, Texas, Vermont, Wisconsin 등의 12개 주와 1개 특별구이었다.

7) NCCUSL, A Few Facts About The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http://www.nccusl.uniformactfactsheets/uniformactfactsueta.asp>.

8) 손태우,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최종안의 내용과 의의, 인터넷법률 3호, 2000.11.

둘째, UETA는 개념에 대한 정의를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UETA는 제2조에서 합의(Agreement), 자동화거래(Automated transaction), 컴퓨터프로그램(Computer program), 계약(Contract), 전자적(Electronic), 전자대리인(Electronic agent), 전자기록(Electronic record),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 정부기관(Governmental agency), 정보(Information), 정보처리시스템(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개인(Person), 기록(Record), 보안 절차(Security procedure), 주(State), 거래(Transaction)와 같이 16개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상세한 개념정의 규정은 새로운 기술의 발달에 따른 법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기술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셋째, UETA는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을 정부부문과 비정부부문으로 나누어 규정하되, 정부부문의 전자기록에 관해서는 전자거래와 무관하게 정부기록의 보존을 전자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넷째, UETA는 UNCITRAL 모델법의 골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그 적용대상을 “상거래(commerce)”가 아닌 보다 넓은 “거래(transaction)”로 하고 있으며, 전자기록의 변화발생이나 오류의 효과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양도성있는 문서”에 관한 조항을 두어 전자화된 어음(note)에 대해서도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점은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이나 우리 전자거래기본법과는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⁹⁾

2.2.3. UETA의 구성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은 다음과 같이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III. 전자거래기본법과 UETA의 비교

3.1. 목적과 적용범위

3.1.1. 목적

법의 목적과 관련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UETA는 주로 통일상법전 제2편(매매편)과 제2A편(리스편)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거래에 관한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을 위한 규정이다. 여기에서 “거래(transaction)”란, “거래”라 함은 사업, 상업 또는 정부에 관련되는 사항의 운영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간에 발생하는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이 정의에서는 법원이나 정부기관에 의한 법률에서 요구되어 있는 통지, 개시 또는 전달을 포함하는 많은 사항이 제외되는 것으로 된다.¹⁰⁾

UETA의 주된 목적은 전자적인 기록과 서명을 종이의 문서 및 수기서명과 법적으로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확립하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다. 즉, UETA가 추구하는 목적과 정책은 다음과 같다.¹¹⁾ 첫째,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의 사용을 유효하게 승인함으로써

10) NCCUSL, Summary,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http://www.nccusl/uniformact_summaries/uniformacts-s-uet.asp.

11) UETA 제6조 Comment No.2

상거래와 정부거래를 장려·촉진하고, 둘째, 서면 및 서명요건과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전자상거래 및 정부거래의 장애를 제거하고, 셋째, 전자적인 수단의 사용을 통하여 상거래 및 정부거래에 적용되는 법률을 단순화·명확화·현대화하고, 넷째, 관습, 관행 및 당사자의 합의를 통하여 상거래 및 정부의 전자관행의 지속적인 확대를 허용하고, 다섯째, 상거래 및 정부거래를 유효하게 수행하게 하는 전자 및 이와 유사한 기술수단의 사용에 관하여 각 주간에(나아가 전세계적으로) 법률의 통일을 촉진하고, 여섯째, 전자상거래 및 정부거래의 유효성, 무결성 및 신뢰성에 있어서 공공의 신뢰를 증대하고, 일곱째, 전자상거래 및 정부거래의 실행에 필요한 법적 및 경영적 기반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3.1.2. 적용범위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제3조에서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전자거래기본법은 공공부문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개인간(B2C; Business to Consumer), 기업과 개인간(B2B; Business to Business), 개인과 개인간(C2C; Comsumer to Comsumer), 개인 또는 기업과 정부간(C2A or B2A; Comsumer/Business to Adminstration) 등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UETA 제3조 (a)항 및 (b)항에서는 “거래에 관련된 전자기록 및 전자서명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① 유언, 유언보충서, 또는 유언에 의한 신탁의 성립 및 집행을 규율하는 법, ② 제1-107조 및 제1-206조, 제2편 및 제2A편을 제외한 통일상법전, ③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④ 각주에서

정하는 기타 법률에 의해서 규율되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UETA는 원칙적으로 모든 거래를 그 적용 대상으로 하되 그 거래와 관련된 모든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을 적용대상으로 한다.¹²⁾ UETA는 거래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에 효력을 부여하여 전자거래의 효력을 간접적으로 부여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유언·유언보충서 및 유언에 의한 신탁에 관한 법률¹³⁾, 통일상법전이 적용되는 대부분의 경우¹⁴⁾, 통일컴퓨터거래법, 각주에서 정하는 기타

12) UETA 제2조 제16항에서는 “거래(transaction)”라 함은 사업, 상업 또는 정부에 관련되는 사항의 운영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간에 발생하는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UETA는 사업, 상업 또는 정부의 업무와 관련된 거래가 아닌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UETA는 사업, 상업 또는 정부의 업무와 관련된 거래로서, 그 거래와 관련된 모든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13) UETA가 유언, 유언보충서, 또는 유언에 의한 신탁의 성립 및 집행을 규율하는 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동 기록은 UETA에서 정의하는 거래에는 거의 사용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14) UETA는 원칙적으로 거래에 관련된 전자기록 및 전자서명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만, 예외적으로 통일상법전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 이루어진 전자기록이나 전자서명에는 UETA가 적용되지 않고 통일상법전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UETA는 통일상법전 제4편의 적용을 받는 수표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표라는 전자기록이 사용된 경우, 소위 전자수표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통일상법전 제1-107조 및 제1-206조, 제2편 및 제2A편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 이루어진 전자기록이나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UETA가 적용된다.

통일상법전 제3편(negotiable instruments), 제4편(bank deposits and collections), 제4A편(funds transfers)이 제외된 것은 동 규정들은 대금지급과 관련되고, 그리하여 기본계약의 계약당사자 외에도 많은 당사자들이 관계되는 바, 전자적 매체의 유효성을 인정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법적 결과(impact)를 다 고려하는 작업은 동 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적용배제 하였다. 또한 제5편(letters of credit), 제8편(investment securities) 및 제9편(secured transactions: sales of accounts and chattel paper)이 제외된 것은 각 편의 규정들은 개정시에 이미 전자거래를 충분히 고려하여 입안하였기 때문이다. 통일상법전 제1-107조 및 제1-206조, 제2편 및 제2A편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 대해 UETA가 적용되도록 한 것은 매매나 리스거래에 있어서는, 수표에 의한 금전지급이나 전자지급이체의 경우와는 달리, 기본계약(underlying contract)의 당사자 이외의 자가 직접 관련되는 거래구조를 취하지 않으며, 또 매매나 리스는 보통 계약당사자 이외의 자(제3

법률에 의해서 규율되는 거래¹⁵⁾에는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전자기록이나 전자서명은 다양한 법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 이외의 다른 법률과 관련해서는 동법이 적용되어 유효하게 다루어진다.

UETA는 기존법률에서 요건으로 되어 있는 서면에 의한 기록이나 서명과 달리, 모든 전자기록이나 전자서명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기록이나 서명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록이나 서명을 담고 있는 매체(medium)에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차이는 법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UETA는 기존법률에서 기록이나 서명의 내용뿐만 아니라 유언이나 수표의 발행과 같이 기록이나 서명이 포함된 매체의 형태까지도 법률요건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즉 서면에 의한 문서에 의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또는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과 같이 해당 법률이 전자기록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정된 경우 등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결국 UETA는 모든 거래와 관련된 전자기록 및 전자

서명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적용의 명확성과 확실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UETA 제3조 (c)항 및 (d)항에서는 “제3조 (b)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법에 의해 규율되는 한도에서 (b)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이 달리 배제되는 전자기록 및 전자서명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이 법을 조건으로 하는 거래는 기타 적용가능한 실체법을 조건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전자기록 및 전자서명은 둘 이상의 법률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용되거나 또는 둘 이상의 법의 적용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UETA는 제3조 (b)항에 의하여 UETA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동조 (b)항에 의하여 UETA의 적용이 배제되는 전자기록 및 전자서명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UETA가 적용되는 거래에 다른 적용가능한 실체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장래의 적용과 관련하여, UETA 제4조에서는 “이 법의 발효일이나 그 이후에 형성, 생성, 송신, 통신, 수신, 또는 저장된 어떤 전자기록 또는 전자서명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① 다른 준거법과 모순되지 않는 전자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② 전자기록과 관련된 합리적인 관행 및 그러한 관행의 지속적인 확대와 모순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③ 이 법을 제정하는 주들간에 이 법의 주제에 관하여 법을 일률적으로 만들기 위한 일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UETA는 전자거래를 유효하게 하고자 하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입안되었으며, 법정이 새로운 기술과 관행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한병원, 미국 통일전자거래법(UETA)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16권, 2001.8, p.337.

15) 주법에 의한 문서 및 서명의 요건중에는 거래의 강행가능성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있으며 UETA와 같은 법률의 채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목적을 가진 것도 있다. UETA는 합의된 전자거래에 대하여 대부분 다른 문서 요건과의 저축을 배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UETA는 저축을 회피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각 주에서 관할지역마다 어느 정도 가공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즉, 이것은 위에서 언급된 적용배제 이외의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각 주의 선택에 따라 UETA의 적용을 배제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주법이 특정 서면 및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거래의 기록이나 서명을 전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며, UETA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적용배제의 범위는 주의 깊게 다루어져야 한다. 당시시간의 계약 및 거래에 관한 대부분의 법률이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을 인정하거나 또는 합의된 전자거래에만 UETA를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면, 다른 서면요구사항과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공익에도 합치하게 될 것이다.

이다.

3.2. 합의에 의한 변경

전자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변경과 관련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제10조에서는 “작성자와 수신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신·수신의 시기 및 장소(제6조),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제7조), 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제8조), 수신확인(제9조)의 규정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전자거래에 있어서의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명시한 것으로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는 임의규정임을 명시한 것이다. 이는 전자거래를 통하여 야기되는 대부분의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인식을 토대로 한 것이며, 전자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법률적으로 규제하지 않으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UETA 제5조 (d)항에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규정의 효력은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이 법의 특별 규정에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이라는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문구의 존재는 다른 규정의 효력이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UETA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규정의 효력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또한 UETA의 특별규정에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이라는 문구나 이와 유사한 의미의 문구의 존재는 어떠한 규정의 효력을 약정에 의해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3.3. 전자문서의 효력

3.3.1. 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에서는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며,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록·보고·보관·비치 또는 작성 등의 행위가 전자문서로 행하여진 경우 당해 법률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전자거래의 촉진 및 확대를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를 기존 종이문서와 차별없이 동일하게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UETA 제5조 (e)항에서는 “전자기록 또는 전자서명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의 여부는 이 법과 기타 준거법에 의해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이 서면에 의한 기록과 서명으로서 가지는 실체법적 효력은 기존법률에 따르고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사용된 매체상의 어떤 기록이나 서명 또는 계약서의 유효성 문제와는 별개이다.¹⁶⁾ 법에서 기록이 담아야 할 최소한의 실체적 내용을 정하는 경우, 그 기록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는 그 기록이 해당 법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¹⁷⁾

3.4. 전자문서의 보관

전자문서의 보관과 관련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에서는 “전자문서가 ① 전자문서의 내용을

16) 예를 들어, 제7조 (a)항과 (b)항은 당해 기록이나 서명 또는 계약서가 유효함을 성립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17) 한병완, 전제논문, p.340.

열람할 수 있을 것, ② 전자문서가 작성 및 송신·수신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③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의 보관으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문서의 보관에 같을 수 있으며,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자문서의 송신 또는 수신만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전자문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UETA는 전자기록의 보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UETA 제12조 (a)항에서는 “법에서 기록이 보존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 그 요건은 ① 전자기록 또는 기타로서 그 최종형태로 최초로 생성된 이후에 기록에서 규정된 정보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고, ② 장래의 참조를 위해 지속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기록에서의 정보의 전자기록을 보존함으로써 충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 요구되는 기록보존의 방법을 전자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전자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확성과 지속적인 접근가능성이 요구된다. 즉, 서면으로 기록을 보존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관련기록이 최종형태의 전자기록으로 변형된 후에 기록상의 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그 이후에도 정보에 접속가능한 상태로 두어야만 기록으로서 인정된다. 전자적으로 유효하게 저장된 기록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기록을 저장한 매체가 안정적이고, 시스템간의 호환이 가능하고, 새롭게 개발된 시스템에 적합하게 되도록 갱신(update)되어야 한다.

둘째, UETA 제12조 (b)항 및 (c)항에서는 “(a)항에 따라 기록을 보존해야 하는 요건은 기록이

송신, 전송, 또는 수신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목적의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어떤 당사자는 (a)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다른 당사자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그 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UETA 제12조 (d)항에서는 “법에서 기록이 원본의 형태로 제시 또는 보존되도록 요구하는 경우, 또는 기록이 원본의 형태로 제시 또는 보존되지 않은 경우 그 결과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 법은 (a)항에 따라 보존된 전자기록에 의해 충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기록의 원본성의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서, 전자기록이 서면에 의한 문서의 원본으로서의 기능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넷째, UETA 제12조 (e)항에서는 “법이 수표의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 그러한 요건은 (a)항에 따라 수표의 전면과 이면상의 정보를 전자기록으로 보존함으로써 충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많은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수표보존법령(check retention statutes)과 관련해서 지급완료된 수표의 원본의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 그 수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보존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한 규정이다. 즉, 수표의 보존을 요구하는 법률의 존재에 의해서 수표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그 수표의 보존은 반드시 서면의 형태로 된 수표로 보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수표를 스캐닝하여 이미지파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섯째, UETA 제12조 (f)항에서는 “(a)항에 따라 전자기록으로 보존된 기록은 증거, 감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기록을 보존할 것을 어떠한 자에게 요구하는 법률을 충족시킨다. 다만, 이 법의 발효일 이후에 제정된 법이 특정 목적을 위하여 전자기록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전자기록으로 보존된 기록은 원본성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금지법규가 적용되지 않는 한, 입증방법이나 감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도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한 규정이다.

여섯째, UETA 제12조 (8)항에서는 “이 조는 이 주의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그 기관의 관할권을 조건으로 기록의 보존에 대한 추가적인 요건을 명시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5. 전자문서의 송수신

3.5.1. 전자문서의 송수신시기

전자문서의 송수신시기와 관련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전자문서는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신시기와 관련하여, 제6조 제2항에서는 수신자가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와 지정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자문서가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닌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출력한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송수신시기에 관하여 기본법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전통적인 대륙법계의 원칙인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UETA 제15조 (a)항에서는 “송수신시기와 관련하여, 송신자와 수신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전자기록은 ① 수신자가 전자기록 또는 송신된 형태의 정보를 수신할 목적으로 지정하였거나 사용하고 있고, 수신자가 전자기록을 검색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적절히 전송되거나 달리 적절히 전달될 때, ② 그러한 시스템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을 때, ③ 송신자의 자 또는 송신자의 대리인외의 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되거나 또는 수신자에 의해 지정되거나 사용되고 수신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영역에 입력될 때, 송신된”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기록의 송신요건과 그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관련 거래와 관련이 없거나 거의 사용하지 않는 주소 또는 장소로 전자기록을 전달하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수신할 수 있는 주소로 전자기록이 전달되어야만 송신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수신자로 의도된 자는 그 수에는 관계가 없지만, 수신자가 수신할 수 있는 주소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또는 확인을 받아두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그러한 합의를 재확인해 두어야 할 것이다. 전자기록은 송신자의 통제를 벗어나거나 수신자의 통제에 들어가게 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개개인의 수신자가 아닌 특정시스템에 송신된 경우에는 송신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UETA는 수신시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UETA 제15조 (b)항 및 (e)항에서는 “송신자와 수신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전자기록은 ① 수신자가 전자기록이나 송신된 형태의 정보를 수신할 목적으로 지정하였거나 사용하고 있고, 수신자가 전자기록을 검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입력될 때, ② 그러한 시스템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수신된다. 또한, 개인이 그 수신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자기록은 (b)항에 의하여 수신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전자기록은 수신자에 의해서 지정 또는 사용되고 그 전자기록이 검색될 수 있는 시스템

에 입력되고, 그러한 시스템에서 처리될 수 있는 형태로 입력된 때 수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전자기록의 수신은 수신자가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에 입력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신자가 전자기록을 검색할 수 있음에도 서버에 남겨둔 채로 그 전자기록을 검색하지 않아 그 수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신이 인정된다.

둘째, UETA 제15조 (f)항에서는 “(b)항에서 규정된 정보처리시스템으로부터 전자확인 수신은 기록이 수신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만, 그 자체가 송신된 내용이 수신된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전자확인의 수신은 수신사실만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송신내용과 수신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은 아니다.

3.5.2. 전자문서의 송수신장소

전자문서의 송수신장소와 관련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제3항에서는 “전자문서는 작성자 또는 수신자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각각 송신 또는 수신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영업소가 2 이상인 때에는 당해 전자문서의 주된 관리가 이루어지는 영업소 소재지에서 송신·수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작성자 또는 수신자가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常居所)에서 송신·수신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문서의 송수신장소에 관한 규정은 계약의 성립장소와 관련되어 있다. 국내거래에서는 계약의 성립장소가 문제되지 않지만, 국제거래에서는 준거법 및 재판관할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준거법 등을 정하기 위하여 계약의 성립장소가 문제로 된다. 승낙의 효력발생지를 계약성립지로 보는 경우, 승낙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도달지가 계약의 성립장소가 된다.

UETA는 송·수신장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

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UETA 제15조 (d)항에서는 “전자기록에서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거나 또는 송신자와 수신자간에 별도의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한, 전자기록은 송신자의 영업소에서 송신되고 수신자의 영업소에서 수신된 것으로 본다. 이 항의 목적상 다음의 규칙이 적용된다. 즉, ① 송신자 또는 수신자가 2이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자의 영업소는 해당전자거래에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장소이며, ② 송신자 또는 수신자가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소는 송신자 또는 수신자의 거주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UETA는 당사자가 전자기록을 송·수신하는 경우 송·수신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송·수신장소에 대하여 별도의 명시 없다면, 정보처리시스템의 실제 소재지가 아니라 당사자의 영업소를 송·수신의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즉, 송·수신의 장소는 각각 송신자의 영업소와 수신자의 영업소이다. 영업소와 관련하여, 송신자나 수신자가 복수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거래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업소를,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지를 영업소로 본다.

둘째, UETA 제15조 (c)항에서는 “(b)항은 비록 정보처리시스템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가 전자기록이 (d)항에 의하여 수신된 것으로 보는 장소와 다를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UETA는 정보처리시스템이 당사자간의 거래와 절대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자기록이 송·수신되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실제 장소와 송·수신된 것으로 보는 장소가 다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IV. 결론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UETA)과 한국의 전자거래기본법을 비교해 볼 때, 양 법률이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 반면,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규정이 통일전자거래법에는 언급되어 있는 규정이 있다. 우선, 양 법률이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거래기본법은 원칙적으로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서, UETA는 원칙적으로 모든 거래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되 그 거래와 관련된 모든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기존 법률에서 기록이나 서명의 내용뿐만 아니라 유언이나 수표의 발행과 같이 기록이나 서명이 포함된 매체의 형태까지도 법률요건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즉 서면에 의한 문서에 의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또는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과 같이 해당 법률이 전자기록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정된 경우 등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둘째, 전자거래기본법은 강행법임에도 불구하고, 송신·수신의 시기 및 장소(제6조),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제7조), 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제8조), 수신확인(제9조)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는 임의 규정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서, UETA는 이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규정의 효력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셋째,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거래의 촉진 및 확대를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를 기존 종이문서와 차별없이 동일하게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서, UETA는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이 서면에 의한 기록과 서명으로서 가지는 실제법적 효력은 기존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문서가 이 법률에서 정하는 기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의 보관으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문서의 보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서, UETA는 법률상 요구되는 기록 보존의 방법을 전자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정확성과 지속적인 접근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전자거래기본법은 송수신시기에 관하여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전통적인 대륙법계의 원칙인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서, UETA는 송신시기와 관련하여, 전자기록은 송신자의 통제를 벗어나거나 수신자의 통제에 들어가게 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개개인의 수신자가 아닌 특정시스템에 송신된 경우에는 송신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수신시기와 관련하여 전자기록은 수신자에 의해서 지정 또는 사용되고 그 전자기록이 검색될 수 있는 시스템에 입력되고, 그러한 시스템에서 처리될 수 있는 형태로 입력된 때 수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여섯째,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문서는 작성자 또는 수신자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각각 송신 또는 수신된 것으로 보며, 영업소가 2 이상인 때에는 당해 전자문서의 주된 관리가 이루어지는 영업소 소재지에서 송신·수신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서, UETA는 송·수신의 장소는 각각 송신자의 영업소와 수신

자의 영업소이다. 영업소와 관련하여, 송신자나 수신자가 복수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거래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업소를,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지를 영업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자거래기본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통일전자거래법에서만 언급되어 있는 규정으로서는,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의 증거의 허용성,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의 귀속과 효력, 서면에 의한 정보제공 및 정보제공방식의 요건, 당사자간의 전자기록의 전송과정에서 발생한 변경 또는 오류의 효과, 전자대리인에 의해 행해진 자동화 거래의 유효성, 전자기록의 양도가능성 등이다.

참고문헌

- 김은기, “전자서명법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입법 취지 및 주요내용,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1994.4.
- 김춘아·강준모,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의 영향 및 의의”, 『정보통신정책』, 제11권 8호, 1995. 5.
- 손태우,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최종안의 내용과 의의”, 『인터넷법률』, 3호, 2000. 11.
- 오병철, “통일전자거래법(UETA)에 관한 고찰-1999년 3월 19일 초안을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제8집, 국제거래법학회, 1999; <http://nongae.gsnu.ac.kr/~windoh/mywork/국제거래법학회발표논문.htm>
- 전순환, 『전자상거래 기본법규』, 한울출판사, 2000. 6, p.14.
- 정경영, “미국 통일전자거래법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2000.
- 한병완, “미국 통일전자거래법(UETA)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16권, 2001. 8.
- Benjamin Wright, *The law of electronic commerce*, Little Brown, 1991, Part III.
- 新堀聰, “最新の美國における電子商取引關聯立法の研究”.
<http://www.nccusl.org>.
- NCCUSL, *A few facts about the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http://www.nccusl.uniformactfactsheets/uniformacts-fs-ueta.asp>.
- NCCUSL, Summary,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http://www.nccusl/uniformact_summaries/uniformacts-s-ueta.asp.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the Basic Law on Electronic Commerce and the UETA

Soon-Hwan Je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on the Comparison of the Basic Law on Electronic Commerce and the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UETA).

The purpose of the Basic Law on Electronic Commerce is to contribute to the national economy by clarifying the legal effect of transactions by means of electronic messages so as to ensure the security and reliability thereof and to secure fair trade, and further by establishing sound and orderly transactions, and promoting electronic commerc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the purpose of the UETA is to remove barriers to electronic commerce by validating and effectuating electronic records and signatures. It is not a general contracting-the substantive rules of contracts remain unaffected by UETA. Nor is it a digital signature statute. To the extent that a State has a Digital Signature Law, the UETA is designed to support and compliment that statute.

Key Words: Electronic commerce, UETA, Electronic transactions

* Professor, Dept. of International Trade, Joongbu University.